

의안번호	2216489
의 퇴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6.6.24.
추 계 번호	26B0569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(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제1호¹⁾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(이하 “주거지원필요계층”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	의무규정
2	안 제16조의3 (청년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 1. 주거비에 대한 보조 2.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	의무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)에게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·운영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산정 방식,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1) 「청년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3조 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6조의3 (청년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청년의 범위를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,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 보조 또는 공공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, 이를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주택 공급·운영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청년의 소득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산정방식, 주거비 보조의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지원기간, 공공주택 공급 지원의 범위 및 소득·자산 기준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, 현행 주거급여, 청년월세지원사업,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²⁾ 수급자와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국토교통부·국토연구원의 2024년 「주거실태조사」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, 가구주가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가구는 323만 가구이며, 이 중 임차가구는 약 266.7만 가구로 추정됨
 - 이들 청년 임차가구 중 소득 및 임대료 정보가 유효한 청년 임차가구는 257.4만

2) 정부의 청년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, 월세지원 사업 현황은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
가구이며, 이 중 RIR(Rent to Income Ratio)³⁾ 30% 초과 가구는 약 49.2만 가구로 추정됨(RIR 산정 가능 청년 임차가구의 19.1%(49.2만가구/257.4만가구) 수준)

- 다만, 이 수치는 주거실태조사 상 청년가구주 기준의 가구 단위 추정치로서,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될 것이므로 실제 사업대상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1] 청년가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(RIR: Rent to Income Ratio) 현황: 2024년 기준
(단위: 만가구)

구분	추정 규모
전체 청년가구 수	323
청년 임차가구(RIR 산정가능)	257.4
RIR 30% 초과 청년 임차가구	49.2
RIR 30% 이하 청년 임차가구	208.2

- 주 1. RIR 산정 가능 청년가구 수는 소득 및 임대료 정보가 유효하고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100%를 초과하는 극단값을 제외한 가구를 의미함
2. 월소득은 경상소득 기준, 임대료는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2024년 9월 전월세전환율 5.9%를 적용하여 환산, 보증금 있는 월세는 실납부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함
3. 청년가구는 가구주 출생연도가 1990~2005년인 가구, 조사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루로 정의함

자료: 국토교통부·국토연구원, 2024년 「주거실태조사」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3) RIR(Rent to Income Ratio)은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을 의미함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주요사업 현황

국토교통부 사업설명자료

□ 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사업

구분	유형	개요	임대조건	임대기간
건설임대	행복주택	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	시세 60~80%	10년~20년
	통합공공임대주택	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	시세 35~90%	30년
매입임대	청년 매입임대주택	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	시세 40~50%	10년(거주 중 혼인 시 20년)
	기숙사형 청년주택	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	시세 40%	10년
전세임대	청년 전세임대주택	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	보증금 : 100~200만원 임대료 : 1.2~2.2%	10년(거주 중 혼인 시 20년)

자료: 국토교통위원회

□ 청년 주거 관련 주요 지원사업(국토교통부 소관)

사업명	개요	예산액(백만원)
청년월세지원사업	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직접 월 임대료 지원(월 20만원, 19~34세 이하 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)	129,953
주거급여(청년 분리지급)	기준 중위소득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~34세 이하 청년에 대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	24,183